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055

발의연월일: 2021. 5. 12.

발 의 자:이원욱·강득구·고용진

김영식 · 김영진 · 김철민

안호영 · 정필모 · 한준호

홍익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는 민간 우주기업들이 우주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소위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며 우주개발(위성제조, 위성 서비스 등)로 발생하는 관련 파급 산업의 경제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지원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지만, 우주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민간 우주기업들은 국방 분야 등 다른 연구개발 사업과 달리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 원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우주개발사업의 경우 그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여 그 특성에 맞는 연구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민간 주도 우주개발로의 패러 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우주개발 지원 정책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간 우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제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제4항 및 제18조제3항 신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는 우주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맺어 수행하는 우주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워"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 1. 제3항에 따라 우주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 2. 우주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 등의 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인공우주물체의 개발·발사 및 그 운용을 위한 우주개발사업의 수행으로 개발된 기술이 실시되어 생산된 물자(物資)의 최종 사용자가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후단,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부문에서 해당 물자의 판매 또는 수출 등으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개발사업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어 실시하고 있는 우주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기술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우주개발사업의	추진)	제6조의2(우주개발사업의 추진)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이나 단체(이하 "연구개발기관"
		이라 한다)는 우주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맺어 수행
		하는 우주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
		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u><신 설></u>		④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u>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u>
		고"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중
		앙관서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의 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
		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1. 제3항에 따라 우주개발사업

원) ① • ② (생 략) <신 설>

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2. 우주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 한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 료 등의 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8조(민간 우주개발사업의 지 제18조(민간 우주개발사업의 지 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7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 기관은 인공우주물체의 개발・ 발사 및 그 운용을 위한 우주 개발사업의 수행으로 개발된 기술이 실시되어 생산된 물자 (物資)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 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 후단,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부문에서 해당 물 자의 판매 또는 수출 등으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